

위원회 관리(구성 및 운영) 분야 특정감사 결과보고

감사 결과

- ▶ 우리구 31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86개 위원회에 대해 위원회 위원구성 및 회의개최, 수당지급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 ▶ 특정감사(위원회 관리분야) 결과 총12건의 부적정(또는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사례를 확인하여 행정상 조치(시정 9건, 주의 3건), 재정상 조치 2,240,000원(회수 1,610,000원, 추급 630,000)을 처분 요구하고자 함.

I

감사개요

1 감사근거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자체감사의 종류)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체감사규칙」제5조 (감사의 종류 및 실시 주기)
- ☐ 2019년 감사업무 종합 계획 [감사실-7587 (2018. 12. 21.)]

2 감사대상 및 범위

-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 ☐ 감사기간 : 2019. 2. 18. ~ 2019. 2. 22.(5일간)
- ☐ 감 사 장 : 상설감사장
- ☐ 감사대상 : 기획예산실 등 31개 부서(86개 위원회)
- ☐ 감사분야 : 위원회 관리(구성 및 운영)

II

위원회 현황 및 중점사항

1 위원회 현황

연번	구분	부서명	위원회(개)	위원회명
총 계			86	
1	실·단	기획예산실	8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		감사실	2	공직자윤리위원회,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3		홍보미디어실	1	연수한마당편집위원회
4	자치행정국	총무과	3	인사위원회, 공직심의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5		마을자치과	3	외국인주민지원정책위원회, 행복마을만들기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6		평생교육과	2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7		안전관리과	4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8		민원여권과	3	민원조정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9		토지정보과	6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적제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10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5	지명위원회, 관광진흥위원회,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립예술단운영위원회, 축제추진위원회
11		복지정책과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위원회
12		사회보장과	1	의료급여심의위원회
13		노인장애인과	1	장애인복지위원회
14		여성아동과	8	양성평등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위원회,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15		출산보육과	1	보육정책위원회
16	재정	재무회계과	2	계약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17		세무1과	1	지방세심의위원회
18		세무2과	1	기부심사위원회

연번	구분	부서명	위원회(개)	위원회명
19	경제국	경제지원과	7	물가대책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도시농업위원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산조정위원회
20		일자리정책과	4	일자리창출위원회,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연수구생활임금위원회
21		자원순환과	1	음식물류폐기물성과평가위원회
22		위생과	2	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23	도시환경국	건설과	2	도로관리심의회,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24		건축과	6	건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25		도시계획과	3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26		환경보전과	1	습지보호지역 관리위원회
27		공원녹지과	1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28		교통행정과	1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29	보건소	보건행정과	1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30		건강증진과	2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31	도서관	연수청학도서관	1	도서관운영위원회

2 중점감사 사항

분야	감사사항
위원회 관리	○ 위원회 구성 - 위원 위촉 : 관련분야 자격요건, 양성평등 적용 등 - 위원 중복구성 : 위원별 위원회 중복위촉 현황 ○ 위원회 운영 - 수당지급 : 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적정성 - 기타 위원회 운영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Ⅲ

감사 결과

1 총 평

- ▶ 우리구에서는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86개의 위원회를 운영(동 행정복지센터 제외)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별도의 감사가 없었으며, 이에 위원회에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해 특정감사를 시행함.
- ▶ 감사를 수행하면서 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위원회 위원의 대리 등) 확인서 작성 등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구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 ▶ 위원회 구성(위원 중복구성 정도, 양성평등)과 운영(대리참석, 정족수)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과도한 위원 중복위촉과 양성평등에 관한 규정 미충족 부서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 ▶ 위원회 수당지급과 위원회 위원구성 등 3개 분야에서 12건의 부적정(또는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를 확인하여 행정상 조치(시정 9건, 주의 3건), 재정상 조치 2,240,000원(회수 1,610,000원, 추급 630,000)을 처분 요구하고자 함.
- ▶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조속한 시정 조치와 위원회 총괄부서(기획예산실)의 지속적인 지도·감독(교육 및 연찬)을 촉구함.

2 지적사항 목록

연번	부서명	지 적 사 항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계		12건(시정 9건, 주의 3건) / 재정상 2,240,000원 (회수 1,610,000원, 추급 630,000원)			-	
1	○○○○ (2건)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회의 참석위원 수당 미지급	시정	추급 280,000원	-	
2		위원회 회의출석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대리참석 서명 및 수당지급	시정	회수 70,000원	-	
3	○○○○○○ (1건)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회의 참석위원 수당 미지급	시정	추급 350,000원	-	
4	○○○○○○ (1건)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회의 불참위원 수당 지급, 대리참석 서명 및 수당지급	시정	회수 280,000원	-	
5	○○○○○○ (3건)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위원 정수 초과운영, 위원 위·해촉 지연	주의	-	-	
6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의 정족수 미달	주의	-	-	
7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위원 위·해촉 행정절차 미이행	시정	-	-	
8	○○○○○○ (1건)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소속공무원 회의 참석수당 지급	시정	회수 70,000원	-	
9	○○○○○○ (1건)	위원회 회의출석에 관한 사항 ㉠ 대리참석 서명 및 안전 심의의결	주의	-	-	
10	○○○○○○ (1건)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위원 위·해촉 행정절차 미이행	시정			
11	○○○○ (1건)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구의원 회의 참석수당 지급	시정	회수 1,190,000원		
12	○○○○○○ (1건)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위원 위·해촉 행정절차 미이행	시정	-	-	

IV

분야별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 위원회 수당 지급

1. 참석위원 수당 미지급 【 ○○○, △△△△△ 】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급 280,000원 / △△△△△ 추급 350,000원)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는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수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은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규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참석수당 지급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일당 7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3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8조에는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전심 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에서는 2018년 2월 22일 제3차 연수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8명의 인사위원이 참여하여 안전을 심의하고 참석부에 서명하였음에도 우리구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4명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에서는 2016년 4월 19일 2016년 제3차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9명의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이 참여하여 안전을

심의하고 참석부에 서명하였음에도, 우리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5명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미참석 위원 수당 지급 【 ●●●●● 】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70,000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3조(수당)에 의하면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에서는 2017년 제3회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위원회 불참한 위원계좌로 참석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3. 구의원 및 소속 공무원 수당 지급 【 ◇◇◇, ◎◎◎◎◎ 】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190,000원 / ◎◎◎◎◎70,000원)

-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실비 변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일반운영비(201목) 3.운영수당의 가.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항목에는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나.심사수당 관련 항목에서 2017년에는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연수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지방의회의원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 그러나, ◇◇◇에서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의원에게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 후 운영수당(참석 수당) 1,19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8. 8.23. 제7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참석수당 7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4. 대리참석자 수당 지급 【 ○○○, ●●●●● 】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70,000원 / ●●●●● 210,000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구청장은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연수구 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위원은 다음 각 호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하도록 하고 있다.

『직무대리 규정』 제2조에는 “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원회 위원의 신분은 대상자의 직위와 관련이 있다하여도 그 직위를 갖고 있는 개인을 위촉하였다 할 것이므로, 별도의 위임 및 대리에 관한 위원회의 근거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위원을 대신하여 의결하거나, 위원자격으로 위원회 참석 및 심사 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 그러나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8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지원협회를 개최하면서 협의회 위원(◇◇◇)을 대신하여 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가 참석하여 참석부에 위원명단에 대리로 서명한 사실이 있으며, 대리참석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에서는 2017년 제1회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및 2018년 제1회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 개최 시 위촉한 위원이 참석하지 않고 같은 소속기관의 직원이 대리 참석하여 대리 서명을 하였으며 이때 참석하지 않은 위원의 계좌로 참석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 1) 당연직위원 : 북한이탈 주민지원 업무담당 과장, 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과장, 북한이탈 주민 다수 거주지역 동장 등
2) 위촉직위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자, 연수경찰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수구협의회·연수구자원봉사센터·세화종합사회복지관·인천하나센터 등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부서 책임자, 그 밖에 북한이탈 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촉

1. 위원회 위원 구성 부적정 【 ▲▲▲▲▲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6조에 따르면 축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은 축제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국장, 구의원 2명, 연수구 예술인연합회장, 연수구 문화원장과 지역 단위에서 문화와 예술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연수구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을 2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나 2016. 6. 2.일 기준 26명, 2016. 6. 24.일 기준 27명으로 구성한 사실이 있다.

2. 위원회 위원 위촉 부적정 【 ▲▲▲▲▲, ○○○○○○, ●●●●● 】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및 주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6조에 따르면 축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은 축제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국장, 구의원 2명, 연수구 예술인연합회장, 연수구 문화원장과 지역 단위에서 문화와 예술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7조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수구 예술인연합회장 및 연수구 문화원장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는 2014. 12. 23.일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2년의 임기

가 지나도록 재위촉 또는 해촉의 행정절차 없이 2017. 4. 7.일에 재위촉한 사실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2018. 12.31.일에 만료됨에도 재위촉 또는 해촉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019. 1. 31.일 현재까지 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인천광역시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

- 2) 1. 「고 등 교 육 법 」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 영 리 민 간 단 체 지 원 법 」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 설 기 술 진 흥 법 」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 가 기 술 자 격 법 」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3)의 자가 된다고 규정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2명을交通安全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았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2018. 12. 28.일에 만료됨에도 재위촉 또는 해촉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019. 1. 31.일 현재까지 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위원회 운영

1. 위원회 회의 정족수 미달 【 ▲▲▲▲▲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9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하며, 축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에서는 2016년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관련 조례에 따라 과반수의에 미달하는 위원이 참석하였음에도 유회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2. 위원회 위원 대리참석 【 ●●●●● 】

3) 1. 건설과장 2. 교통행정과장 3. 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장 4. 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중 2명
5. 관내 초등학교장 중 1명
6.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운영위원회)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또한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등)에 의하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4)와 같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위원회 위원의 신분은 대상자의 직위와 관련이 있다하여도 그 직위를 갖고 있는 개인을 위촉하였다 할 것이므로, 별도의 위임 및 대리에 관한 위원회의 근거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위원을 대신하여 의결하거나, 위원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 위원을 대신하여 위원이 아닌 자(○○○)가 참석하여 참석부의 위원명단에 대리로 서명한 사실이 있으며, 안전 “2017년도 청소년 특별지원(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사실이 있다.

-
- 4) 1.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V

위원회 현황 및 권고사항

1 위원회 위원 중복위촉

☐ 위원회 위원 중복위촉 현황

【2018. 1.31. 기준】

구분	성명	소속	위원회(개)	구분	성명	소속	위원회(개)
구 소속 공무원	○○○	○○○○○	53	구의원 및 민간위원	○○○	***** **	6
	○○○	○○○○○○○	37		○○○	*****	5
	○○○	○○○○○○○	34		○○○	*** *****	5
	○○○	○○○○○○○	22		○○○	*****	5
	○○○	○○○	13		○○○	*** *****	5
	○○○	○○○○○○○	12		○○○	*****	5
	○○○	○○○○○	11		○○○	*****	4
	○○○	○○○○○	10		○○○	***** **	4
	○○○	○○○○○	7		○○○	*****	4
	○○○	○○○○○○○	7		○○○	*****	4

☐ 권고사항

- 구 소속 공무원 :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구성 및 위촉하도록 규정된 위원회 이외에는 조례개정 등을 통해 외부 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구성을 다변화하고, 부구청장 및 국장급 내부 공무원인 위원은 직급완화 등으로 과도한 위원회 중복 위촉 개선 필요.

(구의원은 위원별 3~5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민간위원 : 민간위촉 위원은 해당 자격을 가진 대상자가 관내에 다수 있으므로 3개 이상 중복위촉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위원회 주관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 검토·관리

2 양성평등 규정 위반

☐ 양성평등 규정 위반 위원회

【2018. 1.31. 기준】

연번	부서명	위원회명	위촉직 총원(명)	남성	여성	비고
1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6	4(67%)	2(33%)	
2		용역과제심의위원회	8	5(63%)	3(37%)	
3	○○○	인사위원회	16	12(75%)	4(25%)	
4		통합방위협의회	35	26(74%)	9(26%)	
5	●●●●●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7	6(86%)	1(14%)	
6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7	2(29%)	5(71%)	
7	●●●●●	안전관리위원회	8	7(88%)	1(12%)	
8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7	6(86%)	1(14%)	
9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3	3(100%)	0(0%)	
10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11	10(91%)	1(9%)	
11	●●●●●	기록물평가심의회	2	0(0%)	2(100%)	
12		정보공개심의회	3	2(67%)	1(33%)	
13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8	6(75%)	2(25%)	
14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3	2(67%)	1(33%)	
15		공유토지분할위원회	4	4(100%)	0(0%)	
16		지적재조사위원회	5	5(100%)	0(0%)	
17		경계결정위원회	9	8(89%)	1(11%)	
18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9	6(67%)	3(33%)	
19		연수구립예술단 운영위원회	5	4(80%)	1(20%)	
20		연수구축제추진위원회	14	9(64%)	5(36%)	
21		관광진흥위원회	13	10(77%)	3(23%)	
22	●●●●●	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위원회	4	3(75%)	1(25%)	
23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2	2(100%)	0(0%)	
24	●●●●●	양성평등위원회	8	2(25%)	6(75%)	
25		아동복지심의위원회	6	5(83%)	1(17%)	

연번	부서명	위원회명	위촉직 총원(명)	남성	여성	비고
26	●●●●●	아동위원회	13	1(8%)	12(92%)	
27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11	10(91%)	1(9%)	
28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6	4(67%)	2(33%)	
29	●●●●●	보육정책위원회	10	1(10%)	9(90%)	
30	●●●●	기부심사위원회	9	6(67%)	3(33%)	
31	●●●●●	유통상생발전협의회	7	7(100%)	0(0%)	
3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8	5(63%)	3(37%)	
33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	5	5(100%)	0(0%)	
34		수산조정위원회	13	10(77%)	3(23%)	
35	●●●●●●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11	7(64%)	4(36%)	
36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5	4(80%)	1(20%)	
37		일자리창출위원회	9	7(78%)	2(22%)	
38		생활임금위원회	5	4(80%)	1(20%)	
39	●●●●●	음식물류폐기물성과평가위원회	9	6(67%)	3(33%)	
40	●●●	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11	9(82%)	2(18%)	
41	◇◇◇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7	2(29%)	5(71%)	
42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6	2(33%)	4(67%)	
43	●●●●●	습지보호지역 관리위원회	7	5(71%)	2(29%)	
44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3	2(67%)	1(33%)	
45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8	5(63%)	3(37%)	
46	●●●●●	건강도시운영위원회	9	6(67%)	3(33%)	
47	●●●●●●●	도서관운영위원회	9	2(22%)	7(78%)	

☐ 권고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및 연수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제6조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외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중 54%(47개)가 양성평등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담당부서의 주의를 관심 필요하며, 주관부서인 여성아동과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기 바람.

3 위원회 위원 위·해촉 관리

☐ 위원회 위원 위·해촉

- 위원회 관리부서에서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정해진 임기에 따라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위원 위·해촉 여부를 결정하여 중단 없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관리할 것.
- 또한 위원회 위원 연임규정에 따라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도(별도의 위·해촉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는 해촉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재위촉을 할 경우 위원의 임기 내에 시행해야 할 것임.